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20호 2021. 9. 1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66호)

공 고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102호)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10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1. 목 적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및 수질을 보전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사육제한 대상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함.

3. 가축사육 제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확대지정 내용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말,염소,양은 250m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주거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말,염소,양은 100m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m이내 지역
도시지역	경계에서 300m이내 지역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한·육우,말,염소,양은 100m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한·육우,말,염소,양은 100m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m이내 지역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구역에서 400m이내 지역
관광·온천지구	부지경계에서 한·육우,말,염소,양은 200m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에서 한·육우,말,염소,양은 250m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지역
하천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
도로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 정지구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지역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	「농어촌정비법」 제2조6호의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상류 방향 100m 이내 지역

※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주거지역”이란 「건축법」 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또한,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20%까지 증설할 수 있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번호	읍면명		행정구역 면적(km ²)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km ²)			비율 (%)	비고
				계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한·육우, 말, 염소, 양 가축)		
1	예천읍	기정	47.41	47.70	38.32	9.38	7.21	
		변경	증) 0.29	0.00	감) 0.40	증) 0.40	감) 0.03	
		변경후	47.70	47.70	37.92	9.78	7.18	
2	용문면	기정	71.26	67.95	41.03	26.92	10.27	
		변경	증) 0.03	감) 0.90	감) 8.81	증) 7.91	감) 0.18	
		변경후	71.29	67.05	32.22	34.83	10.10	
3	효자면	기정	67.32	58.79	24.44	34.35	8.89	
		변경	감) 0.09	감) 0.85	감) 1.31	증) 0.46	감) 0.17	
		변경후	67.23	57.94	23.13	34.81	8.72	
4	은풍면	기정	34.54	33.19	16.79	16.40	5.02	
		변경	감) 0.03	감) 0.06	감) 0.42	증) 0.36	감) 0.03	
		변경후	34.51	33.13	16.37	16.76	4.99	
5	감천면	기정	65.06	63.67	39.85	23.82	9.63	
		변경	증) 0.46	증) 0.09	감) 1.13	증) 1.22	-0.03	
		변경후	65.52	63.76	38.72	25.04	9.60	
6	보문면	기정	64.85	57.76	32.96	24.80	8.73	
		변경	증) 0.48	감) 0.45	증) 1.13	감) 1.58	감) 0.10	
		변경후	65.33	57.31	34.09	23.22	8.63	
7	호명면	기정	62.35	59.43	45.05	14.38	8.99	
		변경	증) 0.27	증) 0.01	감) 2.41	증) 2.42	감) 0.04	
		변경후	62.62	59.44	42.64	16.80	8.95	
8	유천면	기정	38.73	37.75	21.73	16.02	5.71	
		변경	증) 0.05	감) 0.18	감) 0.73	증) 0.55	감) 0.05	
		변경후	38.78	37.57	21.00	16.57	5.66	
9	용궁면	기정	31.92	31.97	26.32	5.65	4.83	
		변경	증) 0.04	감) 0.01	감) 1.42	증) 1.41	감) 0.02	
		변경후	31.96	31.96	24.90	7.06	4.81	
10	개포면	기정	36.24	35.94	21.63	14.31	5.43	
		변경	증) 0.15	0.00	감) 0.10	증) 0.10	감) 0.02	
		변경후	36.39	35.94	21.53	14.41	5.41	
11	지보면	기정	78.48	77.19	48.08	29.11	11.67	
		변경	증) 1.01	감) 0.10	감) 1.54	증) 1.44	감) 0.06	
		변경후	79.49	77.09	46.54	30.55	11.61	
12	풍양면	기정	63.24	62.51	41.93	20.58	9.45	
		변경	증) 0.11	증) 0.02	감) 1.09	증) 1.11	감) 0.04	
		변경후	63.35	62.53	40.84	21.69	9.41	
예천군		기정	661.40	633.85	398.13	235.72	95.83	
		변경	증) 2.77	감) 2.43	감) 18.23	증) 15.80	감) 0.76	
		변경후	664.17	631.42	379.90	251.52	95.07	

※ 행정구역 면적은 캐드 상 면적으로 통계연보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5.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예천군 환경관리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예천군 고시 제2018-81호(2018. 12. 5.)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하수도법」(법률 제17852호, 2021. 1. 5. 공포), 「물환경보전법」(법률 제18030호, 2021. 4. 13. 공포)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423호, 2020. 12. 28. 공포) 개정에 따라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하고자 함
-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제2019-141호, 2019. 4. 29.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

-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 나. 배수설비 준공검사 이후 신고사항 추가(안 제8조)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구조 변경,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외 사용,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
-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관련 법 변경(안 제10조)
 - 하수처리구역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
- 마. 원인자부담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안 제11조의2)
- 바.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조문 수정(안 제12조)
- 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관련 법 변경(안 제13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아.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인용 조문 변경(안 제15조)
- 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문 수정(안 제19조)
 - 감면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추가
 - 2개 이상의 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이 큰 하나만 적용
- 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한을 60일 이내로 신설(안 제20조)
- 카.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21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
- 타.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 3년
 - 그 외 징수금, 과오납금 : 5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 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맑은물사업소장) 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 전화 : 054-650-6986, 팩스 : 054-650-6379
- 전자우편 : seok462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미터”를 “직선거리 300미터”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6.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10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도요금”을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하천수”를 “지하수, 하천수”로, “제3조제1항 제2호”를 “제8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조제1항 제3호”를 “제8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를 “「물환경보전법」”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을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8.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 $\times$ (3/100) $\times$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가산금 산출기준을 요금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_(제10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TOC,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
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TOC)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군 읍·면 번지 (통 반)					
	관 중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관 경	ø mm	연 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 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 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u>300미터</u>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 ---- <u>직선거리 300미터</u> --.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1. <u>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u> 2. <u>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u> 3. <u>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u> 4. <u>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u>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생략)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6.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

 ----.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
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
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
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
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
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납
 부대상자는 하수도요금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
 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
 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
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
금의 납부) ① -----
 ----- 하수도요금 및 원인
자부담금-----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현행과 같음)

2. -----

음 각 목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 담당공무
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생략)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
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생략)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
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
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나. 지하수, 하천수-----
----- 제8조제4항제4호-----

다. -----

---- 제8조제4항제5호 ----

3. (현행과 같음)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③ (생략)

제1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사용료를 -----

----- 다만, 2개 이상의 감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생략)

제20조(이의신청)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3. ~ 7. (현행과 같음)

8.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
상인 다자녀 가구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3/100)×(체납일수/월력일수)

<신 설>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가산금 산출기준을 요금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규정 및 별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체금 및 독촉장 발부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9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미납부 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 발부
-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 및 독촉장 동시 발부
-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서식에 따름

나. 감면사항,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기준 설정

다.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1조)

-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 후 다른 미납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납입자에게 환불
-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납부자에게 과오납금 지급(충당)통지서로 통지하고 이자 가산하여 반환
-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

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후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13조)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안 별지 제13호서식)
-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안 별지 제14호서식)
-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안 별지 제15호서식)
-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안 별지 제16호서식)
-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안 별지 제17호서식)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 전화 : 054-650-6986, 팩스 : 054-650-6379
- 전자우편 : seok462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체금 및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감면)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천재지변: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

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감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해당업종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감면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해당업종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6.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오납금 지급(충당)통지서에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④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후 변경)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3.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4.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5.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		전화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독 축 장				
주 소				
성 명				
연도 구분	납 기	. . .	하수량	m ³
체 납 액				
구 분	납기내금액		연 체 금	계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일 련 번 호	납부자			기분		과오납액			발 생 사 유	충당		환불				결재		
	수용가 번호	주소	성명	년도	월	사용료	기타	계		정 리 일 자	충당액	창구일	환불일	환불액	수령인	담당자	팀장	소장

【별지 제11호서식】

증제 호 과 오 납 금 총 당 결 의 서									
공기업출납원		(인)	발 의	년 월 일	(인)				
소 장		(인)	징 수 부 등 기	년 월 일	(인)				
팀 장		(인)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취 급 자		(인)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통 지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원									
구 분		세입년도	세입과목			과오납 총 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과 오 납 액	사용료								
	계								
	과오납합계①					총당후잔액 ①-②			
구 분		세입년도	세입과목			과오납 총 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총 당 내 액	사용료								
	계								
	총당금액 ②					총당후미수납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부)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불이자		
						일 수	금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 잔액 (환불액)				
충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직인)								
참고 : 1.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량	생활하수	m³/일		사업장폐수	m³/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m²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규 경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³/H
		양수능력	m³/일		기 타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m³		특 기 사 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별지 제14호서식】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3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상 태 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한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규 격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 ³ /H
	양수능력		m ³ /H		기 타		
신 고 내 용	용 도						
	사용기간		일 간	m ³	월 간	m ³	
	사 용 량		m ³ /H				
	비 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감 수 량	제품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 함유량(m³) (비율%)	물 사용량 (m³)	기타 감수량 (m³)

하 수 도 사 용 량	용수총량(m³)	감수량(m³)	하수배출량(m³)	사 용 기 간
				20 . . 20 .(일간)

처리기한
즉 시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3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상 태 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법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연체금 및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u>
<u>제10조(감면)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u> <u>1. 천재지변</u> <u>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u> <u>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u> <u>4.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u>	<u>제10조(감면)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u> <u>1. 천재지변: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u> <u>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u>

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5.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6.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③ (생략)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감면사항은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할 수 있

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감면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6.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1단계
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오납금 지급(충당) 통지서에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④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후 변경)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3.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4.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5.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
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한 신고는 제빙업, 빙과
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
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
자의 경우에 한한다.